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성경적 비평

A Biblical Criticism for the Minister's Tax Liability

저자 (Authors)	심종석, 조현정 Chong Seok Shim, Hyun Chung Cho
출처 (Source)	로고스경영연구 13(2) , 2015.6, 43-62 (20 pages) Logos Management Review 13(2) , 2015.6, 43-62 (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로고스경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386451
APA Style	심종석, 조현정 (2015).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성경적 비평. 로고스경영연구, 13(2), 43-62.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성경적 비평

심종석* · 조현정**

<요 약>

본 연구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전면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하여, 현재 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각계의 주장과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성경적 납세원리에 기초하여 그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 논문이다. 곧 성경적 납세원리, 국민개세주의에 기한 법 감정, 사회통합적 국민정서 등을 총체적으로 병합하여,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주안점을 준 논문이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회계는 현금주의를 수용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자기검증이 취약하고,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다분하여 이에 전방위적인 재정공개가 요구된다. 이는 목회자 소득에 관한 투명성 제고를 함의하는데, 당해 시사점은 교회재정공개는 목회자의 신앙적 위상제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목회자 납세의 전향적 수용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청렴하고도 근검한 목회자 지위와 위상정립 등의 순기능적 역할제고에 있다. 둘째, 성경적 시각에서 목회자는 예배집전과 말씀전파에 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지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수입은 마땅히 십일조에 근원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재정공개가 전제된 상황에서 목회자 수입은 응당 십일조에서 각출된 것이어야 하며, 목회자 또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 또한 십일조 명목으로서 재차 구제금원을 출연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십일조로부터 충당된 목회자의 수입은 이중과세의 시각에서 국가의 관여 및 개입은 부당할 것으로, 이는 과세형평의 원칙, 이중과세의 방지, 조세형평의 시각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셋째, 교회의 재정공개와 목회자 납세문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교회재정의 효율적 지출과 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감사제도의 수용이 절실하다고 본다. 당해 사안은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적시되고 있는 한국 대형교회에 국한될 수 있는 특단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으나, 성경적 납세원리의 시각에서 이상의 대응방안은 전격 수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

주제어 : 개신교, 목회자, 납세의무, 재정공개, 십일조, 외부감사제도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부교수, cyrus@daegu.ac.kr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hjc337@gw.kmu.ac.kr

논문접수: 2015.4.15, 1차수정: 2015.6.23, 게재확정: 2015.6.26

I. 머리말

현재 성직자로서 목회자 개인소득의 납세문제는 금년 내 전면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의 대립 내지 극단적 충돌에 직면하고 있는 차제에 바람직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타협의 실마리마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다종다양한 개신교의 사회적 지탄이 봇물 터지 듯 양산되고 있는 시류 속에서 본 사안은 개신교의 종교적 위상에 대한 사회적 적시뿐만 아니라 개신교 내부의 신앙적 정체성에도 일말의 자성적 회의를 촉발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으로 기능하여 가일층 전방위적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최형목, 2014; Bradley & Pruett, 2013; Fishman, 2009; Hopkins & Middlebrook 2008; Raabe, 2008; Worley, 1988).

성직자로서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사회통념상의 보편적 상식과 법 감정에 의지하여 목회자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렇지 않은 지를 재단하기 십상일 것이나, 달리 성경적 납세원리에 입각하여 재고할 경우에는 걱정하고도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가 그다지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이 당면한 실상이다. 환언하면 성경원리에 입각하여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로서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또한 징수자로서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와 고민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지금까지 이곳저곳에서 무익한 탁상공론만이 난무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혹자는 통상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목회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이하 ‘긍정설’), 설령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시각에서 최저생계비의 보존이나 연금·의료·고용·산재보험 등 국민연금에 기한 국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할 경우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이에 반하여 목회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에 치우치게 되면(이하 ‘부정설’), 사회법은 차치하고서라도 작금의 교회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게 되는 우도 도외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진퇴양난 격의 성직자로서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비단 목회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독교신앙을 간직한 크리스천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데, 이를테면 십일조에 관한 사안을 그 일례로 제시할 수 있다. 곧 달이 우리의 소득급여 중에서 과세이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십일조를 떼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이후 실질수령금액을 기준하여 구분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상과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대한 각계 주장의 적정성을 비교·검토하여 이를 성경적 원리에 가감 없이 비추어 보아 그 바람직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곧 성경적 납세원리와 국민개세주의에 기한 법 감정 그리고 사회통합적 국민정서 등을 총체적으로 병합하여 이를 기초로 작금의 개신

교의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하기 위한 방편에서 그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광의로는 성직자로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신실한 크리스천 또한 저마다의 신앙적 정체성과 위상을 견고히 확립함에 있어, 협의로는 본 사안에 관한 올바른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었다.

II. 목회자 납세문제의 사회적 비평

2.1 긍정설

목회자의 납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법적 근거는 통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 두고 있는데, 본조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주의와 ‘과세형평원칙’을 기치에 두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목회자 납세의 긍정설이 힘을 얻고 있는 사회적 배경은 최근 개신교의 신뢰도 추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곧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개신교의 누적 평균 신뢰도는 가톨릭(35.4%), 불교(28.7%)에 비하여 21.3%의 상대적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내부비리 내지 부정부패(21.4%), 목회자의 비윤리 및 납세를 포함한 금전적 문제(20.2%)가 가장 큰 이유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권혁률, 2014).

한편 이 같은 주장에 편승하고 있는 사회저변의 따가운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데, 최근 공중파를 통하여 적시된 다양한 보도사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표창원, 2013; CBS, 2012; MBC, 2013). 그 핵심은 빙산의 일각이나마 현재 목회자의 과도한 부의 축적 내지 이에 결부된 화려한 생활수준의 지적에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대형교회의 목사, 골프연습장이 달려 딸려 있는 고급빌라에 살고 있는 목회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들의 실상 등이 긍정설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상파에서는 목회자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 또한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추적·보도하고 있는 기사도 엿볼 수 있는데, 일례로 골프연습장이 딸려있는 고급빌라에 살고 있는 한 목회자의 연봉이 자그마치 12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례 또한 적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한편 목회자 납세문제에 관한 사회적 적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개신교 일각에서의 동향도 엿보인다. 곧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필요내지 근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가톨릭의 경우를 따라 그간 목회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혜를 배척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도 있다(Blair, 2013). 나아가 교회의 공적·정신적 기여 및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특혜나 대우 등은 베푸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미 목회자 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차제에 당해 납세의무는 응당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신앙적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한 특혜와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순간 종교는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목회자 납세의 긍정설에 힘을 싣고 있다(나이영, 2012; Boone, 2012; Gallant, 2013; Jones, 2014).

그러나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납세의 긍정설에 기한 특단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가톨릭이나 자발적 납세를 실천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소득에 기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기에 종교인에 대한 전면과세를 시행한다면 당해 세목은 응당 근로소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일각에서 성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팽배하여 국가는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의 세목으로 징구하는 과세방안이 부각되기도 하였다(권혁률, 2014; 이동식,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부의 과세방안에 기하여 기타소득은 고정세율이기 때문에 고소득 목회자일수록 유리하고 저소득 목회자일수록 불리한 제도라는 조세형평상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어 현재 세목확정 및 그 시행에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2.2 부정설

이에 반하여 목회자 납세를 부정하고 있는 주장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회헌금은 기부금일 뿐만 아니라 종교법인에 대한 면세규정과 현행 국세법상 목회자에 대한 납세의무규정의 그 어디에도 일련의 납세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상의 긍정설에 대항하고 있다. 나아가 교회헌금으로부터 비롯된 목회자의 소득은 여하히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다만 폭넓은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아 그 명목을 사례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여 두고 있다. 또한 만약 우리나라에서 목회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면,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도 국민보험혜택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체 목회자 대비 기본생활비, 곧 4인 기준 180만원 정도에도 못미치고 있는 약 70%의 목회자 수입을 고려할 때(두란노, 2014), 국가는 최저생계비, 곧 마찬가지로 163만원을 기준한 생계비 또한 보존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긍정설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4; 유경동, 2012).

한편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비단 개인소득세에 그치지 않고 있다. 재산세에 관련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현행 우리 실정법상 처지를 판례에 비추어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83누298」, 1983.12.

07). 취지는 담임목사의 주택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없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부목사·강도사·전도사 등 부교역자의 사택은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일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곧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교회 사찰의 사택 또한 동일한 처지에서 과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결국 부정설은 목회자를 종교인으로 보아 이에 관한 국가의 특례와 대우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기초연금 등에 대한 가입 내지 수혜자로서의 지위가 불투명하거나 원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납세의무의 부과는 조세형평에 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일절 배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2.3 절충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외의 경우를 참조할 때, 그들 목회자는 우리와는 다르게 공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형편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곧 이들은 퇴직 후에 각종의 연금혜택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일반인과 다름없이 수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처지를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꺾다 맞춰 내야 된다는 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일견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앞서 본 것처럼 긍정설 또는 부정설에도 속해 있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주장(절충설)으로서 위에서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직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대신에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나 연금혜택 등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단지 시기를 잘 조정하여야 할 것을 조건에 두고 양자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요한 목회자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입이 열악한 목회자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는 취지에서 일말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Ⅲ. 목회자 납세문제에 관한 성경적 시각

3.1 구약의 처지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우선 지금의 목회자들이 구약시대에 레위지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약성경 민수기의 기록(민 17-18)을 통해 이하 면면을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본장의 기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고라당의 반역사건을 계기로 레위지파에게 주신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다. 민수기 17장은 이를 다루고 있는 기록이다. 이 기록은 구약성경에서 레위지파의 특권을 확인하고 있는 마지막 기록이 되는데(민 16:01-35, 36-50, 17), 그 내용은 어느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밝히 보여주시고 계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지하듯 본 기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명확히 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식적인 의무에 관한 규례를 분명히 확정해 두셨다. 이유는 자주 동요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내용은 우선 레위지파의 공식적인 의무와 레위지파의 의무이행에 따른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규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십일조에 관한 내용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레위지파의 소득에 관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십일조에 관한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주셨다. 본래 십일조에 관한 규례는 신명기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 레위인을 포함하여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 등에게도 주라고 명하신 레위기의 기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하 구약에서 십일조에 관한 주요 기록을 발췌하여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 성물이 되리라”(레 27:31-32),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민 18:21-28),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 너는 마땅히 매 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 12:06-17, 14:22-23, 26:12).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갔다. 그렇지만 레위지와 또한 그들 소득의 십일조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했음을 잊볼 수 있다. 이 경우 십일조의 명목은 레위지와 소득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정히 사용·지출되었음을 바로 볼 수 있다.

3.2 신약의 처지

신약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구약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당시 교활했던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벌미삼아 예수님을 말씀을 꼬투리 잡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 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마 22:17-22, 막 12:13-17).

여기서 교활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는 자가 유대인의 압제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며 따질 요량이었고, 달리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이르시면, 로마에게 고발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계획하고 있었다. 이도 저도 아니게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되레 그것도 모른다고 조롱하려는 검은 속내를 감춰두고 있었다. 곧 바리새인들은 그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든 자신들의 꾀에 틀림없이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바리새인들과 수하들의 속내를 보시고 이를 통렬히 질타하시면서 유명한 명언으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라는 말씀을 남겨 주시게 된다. 그렇다면 쉽게 보아 ‘세금은 세금대로, 예물은 예물대로’라는 말씀으로 바로 새길 수 있다(김기석, 2014). 한편 이에 덧붙여 참조할 수 있는 십일조에 관한 신약의 기록은 이하 다음과 같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눅 11:42, 18:12)

한편 예수님 공생애 당시 인구조사를 받는 스무 살 이상의 남자는 유대인의 율례에 따라 성전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당시 성전세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이 담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국내외 유대인들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되었다. 성전세는 당시 화폐로 반 세겔을 납부하여야 했는데, 이는 근로자 이들의 품삯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외에서 모여든 유대인은 성전세를 율례에 따라 세겔로 환전하여야 하는 불편 또한 감수하여야 했고, 이때 환전상은 막대한 환전수수료의 이익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례에 따른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성전세를 납부하시기도 하였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마 17:24-27)

다른 한편 사도바울 역시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과 신앙인의 양심을 앞세워 크리스천의 납세의무에 일견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01-07)

신약에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자주 등장한다. 예수님께서도 비록 남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긴 하셨지만 정히 세금을 내셨다(마17:24-27). 당시 로마화폐에는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을 항시 종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고민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계책임을 아셨다(마22:15-22). 한편 위의 기록에서 사도바울은 정부의 세금징수는 합법적이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로마의 세금제도라는 시대적 배경과는 별개의 문제로 세제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여부가 아닌 원리원칙에 기반을 둔 신앙적 입장이었다(McGee, 2012).

3.3 소결

그렇다면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하여 신구약은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고 우리에게 그 적정한 해결책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먼저 구약에서 레위지파의 소득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각출)에 의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각출된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로서의 재물이 아니라, 마땅히 예물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레위인이 이스라엘로부터 취한 십일조에서 일정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이스라엘의 공익을 위해 또 다시 세금으로 바쳤다면 이는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또 다시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되새겨 볼 경우 한마디로 ‘(가이사의 것) 따로, (하나님의 것) 따로’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또 다시 떼어 내어 가이사에게 바친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비록 명목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바울 또한 국가권력에의 존중과 사회통합적 그리고 합일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금납부의 정당성을 주창하고도 있다.

그렇다면 신구약을 종합할 때, 예수님과 사도바울의 경우는 예외적 처사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목회자(레위지파)는 소득에 관한 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따로(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따로(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구분하여 이미 드렸거나 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사관을 기초로 국가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납세원리에 기초할 때, 과연 하나님의 것이 목회자에게 다름없이 귀속되고 있느냐는 명목상의 문제와, 목회자 또한 그들의 십일조를 온전히 구제의 방편으로 정히 구별하여 납부하고 있느냐는 신앙적인 문제는 여전히 병존한다.

Ⅳ.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한 비평과 실천적 대안

4.1 성경적 납세원리

신구약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그렇다면 목회자의 납세에 관한 작금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결론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귀속주체와 명목의 시각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실태는

영킨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성경사관에 기초하여 살피기에, 우선 레위인[목회자]의 수입은 전적으로 이스라엘[국민]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환언하면 레위인 수입의 근원은 이스라엘의 십일조 외에 다른 명목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레위인의 수입을 제외한 당해 십일조의 여분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할당됨을 원칙에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신 26:12). 재론하기에 이 경우에도 레위인은 마땅히 십일조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현재 목회자의 수입은 긍정설에서와 같이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고 마땅히 신앙인의 각출에 의한 생활비로서 그 명목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교회에서 소위 목회자의 사례비는 통상 십일조의 계정이 아닌 별도의 사례비 계정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상례라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십일조에서 목회자 사례비의 예산집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나아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구제헌금은 별도의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음이 통례라 할 때, 이미 십일조 본연의 구제를 위한 쓰임새는 이미 무익한 것으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만약 십일조에서 목회자에 대한 예산집행이 전제되는 경우 국가는 근로소득 명분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곧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다만 십일조가 아닌 그 밖의 교회수입에서 목회자 사례비가 충당되는 경우 일체 근로소득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사관에 기초하여 목회자는 적어도 수입에 관하여 이미 레위인으로서 그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에서이다.

결론적으로 십일조에서 구별된 목회자의 수입은 국가가 당해 수입에 기초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해서는 곤란하고, 이에 일체 종교인의 기부금으로 취급하여 특단의 납세의무를 부과해서는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회재정에서 목회자의 수입을 십일조에서가 아닌 특단의 명목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경사관에 비추어서도 불합리하며, 나아가 이로부터 마땅히 과세의무가 부과되어도 성경적 시각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추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4.2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형평

4.2.1 긍정설에 대한 비평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긍정설은 성경적 시각에 저촉되는 일면을 갖는다. 왜냐하면 목회자 수입의 근원으로서 신앙인에 의해 각출된 금원은 과세 이후 실질수령금액에서 기부된 금원으로서, 예컨대 구제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시각에서이다. 만약 이러한 명목에서의 금원에 재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면 당사자로서 신앙인은 물론 수혜자로서 목회자의 납세형평을 저촉케 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목회자의 납세를 명문의 법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 교회사업에 부수하는, 곧 교회의 목적사업에 의한 종교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내지 감면의 사안은 물론이고 재산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김유찬, 홍성익, 2013). 나아가 비영리 종교단체에 관한 세제상의 혜택이 일절 배척되는 경우 종교단체 또한 비영리 목적사업 외에도 일체의 수익사업 내지 영리에 관한 이윤추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일파만파의 법적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선단체에의 기부금 내지 사회공익을 위한 자발적 출연행위 또한 납세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목회자의 납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이미 원초적인 이유를 상실했다고 보아 여하히 그 원인 내지 이유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4.2.2 부정설에 대한 비평

그렇지만 목회자 또한 일국의 국민으로서 응당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 할 때, 국민개세주의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제아무리 법률의 처지와 대우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납세의무 면탈이 합법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 일체감 내지 연대감에 저촉되는 일면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성경적 시각에 비추어 목회자 또한 십일조의 각출과 구제헌금의 납부의무 또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오로지 납세의무의 면탈에만 주안점을 둔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목회자의 납세의무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목회자 수입에 대한 명목상의 일치이다. 곧 목회자의 수입이 과연 각출된 십일조에 기하여 그들의 생활비 내지 생계비의 수준에서 일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상여금을 포함한 사례비는 차치하고서라도, 목회비, 교회 법인카드에 의한 대외협력비, 해외체류비, 왕복항공료, 과외교육비 등의 유학비를 포함한 일체의 자녀학자금, 생활비, 품위유지비, 차량구입비, 도서구입비, 접대비, 의료비, 사택유지관리비, 재산세 내지 지방세 등이 명목이 그것이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례비는 이중 한 가지 항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목회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세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목회자 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혹여 별도의 명목 내지 계정으로 지출되고 있다면 이는 과세형평에 우선하여 개인에 대한 납세특혜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회가 제반 영리 내지 수익사업을 교회의 목적사업에 수용하고 있는 경우 이 또한 면세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시 된다. 나아가 절충설의 시각에서와 같이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여 목회자에게 일정부분 과세를 의무화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와 과도한 사례를 받고 있는 부요한 목회자

의 형평에도 특단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3 사회통합적 국민정서

4.3.1 교회의 재정전환

작금의 개신교의 지교회 내지 교단에서는 교회의 재정공개를 일절 불문에 붙이고 있음이 상례이다. 설령 공개의 여지가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그 행사는 지교회의 임의처분에 두고 있거나 또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이 보편적이다. 통계지표에 비추어 재정공개(12%), 재정보공개(88%)의 현실이 이를 증한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 이처럼 교회가 재정공개를 금기시하고 있는 외견상의 이유는 대체로 교회회계는 영리회계가 아니므로 이윤동기에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소비지출만을 의욕한 비영리회계라는 점, 사적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지분의 매매·교환·상속 등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편익을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사회성과 공공성의 기초위에서 일방적인 소비지출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조병연, 임재희, 2012; Lyytikäinen, 2013).

그러나 교회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교회회계처리에 관한 적정기준이 개별 지교회 내지 교단의 임의처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특권자(목회자)의 주도에 의한 재정의 임의전환, 소수의 예산집행 내지 처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재, 교회의 정치권력화와 세속화, 교회의 사유화 등에 대한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상당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여타 종교에 비해 유독이 현재 개신교의 부정부패가 갈수록 만연해져 가고 있는 상황과 더욱이 이에 대한 신랄한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회의 재정공개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은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보다 주도면밀히 감찰케 하는 동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4.3.2 목회자의 납세 인식

그간 목회자의 납세는 다음의 이유에서 배척되어 왔음을 살필 수 있는데, 곧 부정설에 대한 긍정의 시각에서 이를 대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기윤실, 2013). 첫째 관습법적으로 종교인의 과세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곧 종교계의 비과세는 관행이며 종교인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는 점, 둘째 외국의 사례는 국가로부터 일련의 지원 내지 보조를 받고 있는 까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회와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없다는 점, 셋째 교인들에게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지급된 사례비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헌금의 사용은 핵심적 신앙행위이므

로 반사회적 행태가 아니라면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교회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정교분리로 정부가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감사를 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다섯째 당초 종교인에 대한 과세납부는 반기독교적 정서확산이라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다(주재일, 2007).

이러한 각각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곧 긍정설에 대한 수용의 시각에서 앞선 주장에 대응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간 불법정치자금이나 재벌탈세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행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의 조세정의는 공평과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과세행정력 부족으로 과세하지 못한 부분이 관행으로 용납될 수는 없고, 또한 일각의 주장과 같이 과세납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관행자체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때 관습법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종교인 비과세가 사회저변의 인식에 용해된 것은 아니며 도리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둘째 목회자가 납세함으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차별받는 것은 없다. 곧 국가로부터의 혜택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냄으로써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름지기 세금은 국가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구성원인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이므로 특정인이 세금으로 분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른 국민들에게 추가부담이 되고,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은밀히 구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여야 한다. 요컨대 국민으로서 분담해야 의무인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구제에 나서는 것은 이웃사랑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이에 따라 세금은 이웃사랑의 최소한의 실천행위이다.

셋째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재차 과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이중과세방지의 개념이라면 교인들에게 귀속된 소득에 따라 납세한 후의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비는 소득의 귀속주체가 각각 구별되고 소득의 성격도 각각 다르므로 교인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목회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별개의 납세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성직자 납세문제의 논점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소득 중 납세 후 기부금으로 급여를 받는 복지기관 직원의 경우도 관점은 동일하다.

넷째 정교분리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또한 종교집단이 특정권력의 탄생에 기여하거나 비호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견제와 상호 존중에 핵심이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이러한 취지와 무관하다. 즉 정당간의 권력창출 경쟁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 행정부의 국가운영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사안이다. 현금의 직접적 사용에 있어 교회는 이미 수많은 배려를 받고 있으며, 목회자의 납세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동시에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지금까지 주민세·유류세·교육세·방위세·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직·간접세를 납부하던 교회와 목회자들이 유독 목회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만 특단의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납세는 말구유와 십자가로 낮추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을 세상에 전하는 관점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성하고 초라해질지라도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과정은 목회자는 물론이고 개신교의 위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기윤실, 2013).

4.3.3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

현행 조세법 내지 실정법상 목회자의 납세와 당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일련의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목회자의 납세의무를 면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는 이웃사랑에 기한 교회의 사회적 책무가 법률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실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이치와 사뭇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논점은 교회가 비영리단체로서 공익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의 해와 다르지 않을 것인데, 곧 종교활동은 공익에 목적을 두고 있다기보다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으로 공익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부수하여 교회의 자선이나 구호활동은 공익의 목적보다는 저변에 교세확장을 주된 목적으로 둔 경우가 통상이기에 과연 이러한 활동을 공익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공공연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타산적 이해는 재정 비공개 현실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공익활동에 대한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로서 당연한 신앙적 의무가 도외시된 상황에서 오로지 비영리단체로서 지위만을 앞세워 국가 구성원으로서 특혜 내지 대우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전인수식의 왜곡된 신앙의 발로라고 취급할 수 있기에 충분하고, 설령 제반 법령의 처지가 이를 다름없이 보장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성경사관에 비추어 종교인 또는 교회의 공익적 기여 내지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작금의 납세의무에 대한 목회자의 저열한 인식과 행태는 이율배반적 무책임한 처사라 폄하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으로 본다(McGee, 2012).

그 이유는 목회자 수입이 사례비로서 마땅히 취급되기 위해서는 명목상 그 근거가 십일조로부터 각출된 금원에 기인하고 있어야 함이 마땅하고, 나아가 이에 상당한 목회자 수입 또한 공익적 사회적 책무에 또 다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 해석기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약의 처지에서도 납세의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계신 예수님의 예화에서나 국가공권력에 대한 전향적인 협조와 긍정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주장에서도 그 명분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각설하고 2012년 통계지표에 비추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는 전체인구(41,041천명) 대비 약 20%(8,616천명)에 이르고 있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중 약 21%(1,800천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소위 개신교 대형교회 10곳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대형교회는 한결같이 교회세습, 세금탈루, 성추행, 과대한 사례비 지급, 학위논문표절, 교회의 대형화 및 기업화 등의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작금의 개신교의 위기상황은 주지하듯 목회자 납세문제로 비화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급기야

2015년 목회자 납세를 법률의 규정으로 의무화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는 차제에 있다.

4.4 목회자 납세의 실천적 대안

4.4.1 교회의 재정공개

교회회계는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이 상식적으로 단순한 현금흐름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과 손익구성은 물론이고 적정한 재정지출의 원인 내지 결과를 평가할 수 없는 불완전한 기록으로 당해 기록상의 오류나 누락된 거래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증에 매우 취약하다(강태균, 2014). 나아가 현금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이유에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산 및 부채의 비효율적 관리, 기간별 재무성과의 비교 불가능, 감가상각, 미지급 등의 인식에 따른 가용재원의 과대평가의 가능성, 정확한 원가산정에 기초한 성과 측정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부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다분하다(조병연, 임재희, 2012; 조현연, 전수연, 2002). 이 같은 교회회계는 내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상 대외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세금탈루 또는 막대한 수입의 임의지출 또는 전횡 등에 쉽게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교회의 투명한 재정공개는 광의적으로 작금의 개신교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단초제공은 물론이고 협의적으로는 목회자의 신앙적 위상제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목회자의 납세의무의 전향적 수용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청렴하고도 근검한 목회자의 지위와 위상정립 등의 순기능적 역할제고에 결정적인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김근상, 2013).

4.4.2 목회자 수입의 명목일치

재론하기에 성경적 시각에 기초하여 목회자 수입은 십일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곧 십일조 외에 다른 계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레위인의 신앙적 정체성임과 동시에 그 마땅한 소임 내지 자세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교회재정 공개가 전제된 상황에서 목회자의 수입은 반드시 십일조로부터 각출된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목회자 또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의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 재차 그들 자신 또한 십일조 명목으로서 재차 구제금원을 출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십일조로부터 충당된 목회자의 수입은 이중과세의 시각에서 국가가 일절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여하히 납세의무를 부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교회 재정공개 여부를 원인으로 목회자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그 조건에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목회자의 납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민연금 내지 퇴직금의 보전 또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국가는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정히 확보·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교회의 재정공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 교회구성원의 기부금 납부(십일조를 포함한 각양의 헌금 세목)에 따른 원천징수자료에 의거하여 교회 본연의 사회적 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일체의 면세규정을 과감히 삭탈하고 이에 납세의무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목회자 수입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나아가 종교단체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의 범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공시의무 및 감사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개인의 차별적 취급, 지방세 적용에 대한 문제 등에 관한 과세제도 정비는 논외의 사안이 될 것이다(이원주, 2011).

4.4.3 외부감사제도의 도입과 운용

현실적으로 교회재정공개와 목회자 납세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존하고 있는 현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각각의 문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당해 문제의 해결책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교회재정의 효율적 지출과 집행을 적의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감사제도의 수용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본 사안은 대형교회에 국한될 수 있는 특단의 문제라고도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한국 개신교의 바람직한 이정을 곧추세우고 나아가 그 지평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에서 매우 긴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일 것이라 본다. 물론 소형교회 내지 개척교회 또한 이에 준하여 동일한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견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름지기 개신교의 대형교회는 그간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의 부정적 시각과 따가운 시선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공동의 연대책임을 지고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들의 바람직한 이정을 재정립함에 있어 본연의 시대적 사명이자 책무일 것임을 함의한다.

V. 맺음말

작금에 목회자 납세문제가 촉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름지기 목회자의 교만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본다. 보다 정확히는 교회를 목회자 자신의 개인소유로 보아 보다 2 크게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음을 앞세워 두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된다. 곧 여리고성보다도 더 큰 교회, 교회이름을 앞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목회자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보다 이해가 빠른 교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순서를 정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야할 정도로 큰 교회를 만들었거나 만들고자 하는 목회자의

교만과 헛된 탐욕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 본다.

앞서 우리가 본 그대로 고라는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다. 이유는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곧추세우기 위함에 있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의 기치를 든 것은 그들의 헛된 탐욕 때문이었다. 이 경우 탐욕은 가나안에 있었고 그곳은 그들에게 재물의 보고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다면 고라를 비롯하여 다단과 아비람이 음부에 빠진 결정적 동인은 지위, 명예 그리고 재물을 향한 탐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인에게 주신 특권은 제사[예배]의 집전과 이스라엘로부터 각출된 십일조에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각출된 십일조의 취득에도 레위인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십일조 및 각양의 재물을 다름없이 봉헌하여야 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 비하여 봉헌에 따른 절차와 형식이 보다 까다롭게 요구되었다. 추상같은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주신 특권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의 지위를 구별하는 특권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지켜야 할 특단의 의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목회자의 수입은 하나님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씀으로 보다 정확히 되짚어 두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때마다 정확하게 요구하고 또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 깊은 납세의무의 전향적 행실을 이 시대와 크리스천 앞에 비추어 부디 저 심오한 신앙적 영성의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손에 이끌려 들고 깨달았던 낱알의 것을 우리는 물론 이 시대 앞에 명명백백히 바로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부터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로서 또한 이 세상 앞에 당당한 목회자로서 어디서나 극진한 존경을 한 몸에 변함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필자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로서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설왕설래의 납세문제는 지금까지의 무익한 시각에서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되었을 것이라 본다.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논자의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골고다의 구렁을 지쳐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세상 앞에 내어 놓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사업으로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용처를 두고 말이다. 그 옛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우리 신앙의 열조로서 다윗의 고백이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목회자 또한 우리의 기도제목이자 신앙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대상 29:13-19)

참고문헌

- 강태균 (2014).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55, 153-154.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4). 재정공개실현과 과제, 교회재정공개좌담회자료, 3-4.
- 권혁률 (2014). 누가 억울하게 세 부담을 갖는가?. 새가정, 61(664), 102-103.
- 권혁률 (2014). 만년 낙제 한국교회,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독교사상, 663, 192-197.
- 기윤실 (2013).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교회재정세미나자료, 29-31.
- 김근상 (2013). 왜 오늘날 교회의 공공성이 문제가 되는가? 기독교사상, 649, 13-14.
- 김기석 (2014).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기독교사상, 669, 66-70.
- 김성호 (2012). 글로벌 시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0(4), 189-203.
- 김유찬, 홍성익 (2013).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연구, 13(1), 205-232.
- 김휴섭 (2002). 성경 속의 회계사상.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이영 (2012). 성숙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직 희망은 있고. 기독교사상, 642, 250-255.
- 대법원, 「83누298」, 1983.12.07.
- 두란노 편집부 (2014). 목회자의 이중직. 서울: 목회와 신학.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우리나라의 종교현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2호」, (2014. 08).
- 유경동 (2012).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 윤리. 신학과 세계, 75, 289-290.
- 이동식 (2007). 소득세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고찰. 조세법연구, 13(3), 72-99.
- 이원주 (2011).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93-97.
- 조병연, 임재희 (2012). 교회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6, 396-402.

- 조준현, 박세현 (2004). 성경의 기업윤리와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 방향. 산업경제연구, 17(6), 2585-2604.
- 조현연, 전수연 (2002). 종교법인의 회계 및 재무보고 설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2), 149-172.
- 주재일 (2007). 종교인 세금 납부, 개신교는 정말 억울한가?. 월간말, 255, 36-41.
- 최현동, 황호찬 (1998). 우리나라 교회 회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기독교사상, 474, 87-111.
- 최형목 (2014). 종교인 과세에 즈음하여 종교의 공공성을 생각한다. 새가정, 61(668), 20-24.
- 표창원 (2013. 01. 16). 목회자 납세 · 세습문제. 뉴스앤조이.
- 하석태, 이아람 (2009). 청지기 관점에서 본 엔론사와 SK글로벌사의 분식회계 사례 비교 분석. 로고스경영연구, 7(1), 103-134.
- CBS (2012. 07. 05). 교회협의회 목회자 납세 공청회.
- MBC (2013. 08. 30). 목사님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 Blair, S. A. (2013). Tax in the cathedral: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tax. Virginia Law Review, 1169-1233.
- Boone, J. I. & Khurana, K. (2012). Religiosity and tax avoida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5(1), 53-84.
- Bradley, D. & Pruett, L. (2013). Church income regulations to keep non-profits from losing their 501-3C. Small Business Institute, 47.
- Fishman, S. (2009). Every non-profit's tax guide: How to keep your tax-exempt status & avoid IRS problems. Nolo Publications.
- Gallant, M. (2013). Tax and the proceeds of crime: A new approach to tainted finance? Journal of Money Laundering Control, 16(2), 119-125.
- Hopkins, B. R. & Middlebrook, D. (2008). Nonprofit law for religious organizations: Essential questions & answers. John Wiley & Sons.
- Jones, S. (2014). Death and taxes: Estate taxes. Tax Breaks Newsletter, 339, 1-2.
- Lyytikäinen, T. & Torsten S. (2013). The effect of church tax on church membership.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6(3), 1175-1193.
- McGee, R. W. (2012). Christian views on the ethics of tax evasion. The Ethics of Tax Evasion, 201-210.
- McGee, R. W. & Sheldon R. S. (2012). Ethics, tax evasion and religion: A survey of opinion of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e Ethics of Tax Evasion, 211-226.
- Raabe, W. A. & Whittenburg, G. E. & Horowitz, I. (2008). Even exempt organizations can be taxed on unrelated business income. Practical Tax Strategies, 80(05).
- Worley, A. (2008). The Unrelated Business Debate. History News, 8-14.

A Biblical Criticism for the Minister's Tax Liability

Chong Seok Shim* • Hyun Chung Cho**

〈Abstract〉

This paper is to infer the desirous solution on minister's income tax payment issue of the background of biblical tax payment principle. this paper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since church accounting is based on cash payment policy and therefore cannot be fundamentally self-verified, resulting in having a possibility of incorrect financial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by church should be required basically.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by church will contribute to greatly improving positive functions of Korea protestant church such as religious status of minister, re-establishment of recogni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good by church, creation of social sympathy resulting from proactive acceptance of liability to taxation by minister, establishment of status and position of minister of integrity and thrifty. Secondly,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the income of minister is based on tithes. Therefore, under the precondition of financial disclosure by church, the income of the minister should come from tithes. Furthermor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income tax of the minister is not collected, they have to voluntarily give money for relief in the name of tithes by reflecting their faith. In this case, the income of the minister allotted from the tithes should not be interfered by the government from the point view of double taxation. Furthermore, it can not be subject to taxation; Third, considering the financial disclosure by church and the issue of tax payment by minister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in reality, the acceptance of external audit system by church, among other things, is desperately needed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 expenditure and implementation of church's finance. This issue may be treated as the special situation confined to big sized churches. However, it can be a very critical and urgent current issue in terms of positive point of view for establishing the desirous direction of Korea protestant towards the future. The big sized churches have been at the center of giving the negative image of Korea protestant church to the public on the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minister's income tax payment issue, and therefore, should be responsible for such result and try to cope with this issue jointly and severally.

Key words : protestant, minister, tax liability, financial disclosure, tithe, external audit system